

「평창군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22년 01월 13일 지광천의원이 발의하고,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

1. 제안이유

우리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 대상으로서 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안 제3조)
- 나. 이자보조 지원 대상 사업(안 제4조)
- 다. 이자보조 비율 및 지원한도(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라.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안 제7조)
- 마. 미지급 및 환수(안 제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군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는 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며, 다만 직전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이자보조 지원 대상 사업

안 제6조에서는 이자보조 비율 및 지원한도

안 제7조에서는 대출 금융기관과 협약

안 제8조에서는 미지급 및 환수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 조례안 시행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강화 및 농업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 참고자료: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령」